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84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4.

발 의 자:권칠승·김준혁·소병훈

박홍근 • 위성곤 • 송옥주

김남희 • 이건태 • 김용만

한병도 · 송재봉 · 정성호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귀국하여 대한민 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세 대주에 한해 정착 지원을 하고 있음.

그러나 독립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정착 지원의 대상을 손자녀뿐만 아니라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제기됨.

이에 정착 지원의 대상에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 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법률 제 호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세대주
- 4.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 중 세대주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6조(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| 제26조(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| | |
| 특례)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 | 특례) | | |
| 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| | | |
|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 | | | |
| 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| | | |
|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| | | |
|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| | | |
|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| | | |
|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| | | |
| 정하는 바에 따라 정착금을 지 | | | |
| 급할 수 있다. | | | |
| 1.·2. (생 략) | 1.·2. (현행과 같음) | | |
| <u><신 설></u> | 3.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중 | | |
| | <u>세대주</u> | | |
| <u><신 설></u> | 4.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 중 | | |
| | 세대주 | | |